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중 신청사유서를 삭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협정상 연결원산지증명의 정의 및 이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합의됨에 따라 구리암모늄 원사를 사용하여 제조한 직물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연결원산지증명”이란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추가 가공 없이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원산지증명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명칭·주소·전화번호”를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속·직위·성명”을 “소속·성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실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를 “발급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

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제10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전단 중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재발급하는”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발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이 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발급된 경우로서 같은 방식으로 정정발급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연결원산지증명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수입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3. 수출하는 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 확인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7조제3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5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30일 전까지”를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로 한다.

제18조제6항 본문 중 “5년”을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호 중 “원본”을 “원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의 5408의 원산지 인정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408	제5403.10호, 제5403.31호부터 제5403.32호까지, 제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제5403.41호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0호까지, 제5205호부터 제5206호까지, 제5403.39호 중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 외의 다른 물품 및 제5509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

별표 9 제3호의 5508~5511의 원산지 인정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508 5509 5510 5511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사 또는 견웨이스트(카드, 코움 또는 그밖의 방직준비 처리를 한 것에 한정한다)</li> <li>2. 천연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직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li> <li>3.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li> <li>4. 제지 원료</li> </ol> <p>※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이 부의 주석 6 참조 &lt;제5510호는 별표9 제4호 참조&gt;</p>
------------------------------	---

별표 15의4 제3호의 8540.11~8540.89의 품목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540.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퍼센트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8540.12	
8540.20	
8540.40	
8540.60	
8540.71	
8540.79	
8540.81	
8540.89	

별표 15의7 제3호의 8479.89.9099의 품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자동 마그네틱 테이프 제조기는 제외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세관기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세관기재란(For Official Use Only)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작성방법 참조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제1호 신청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구분	신규발급 [ ] 재발급( ) [ ] 정정발급( ) [ ] 소급발급(선적 후 발급) [ ]		
	신청 사유	재발급	분실 [ ] 도난 [ ] 훼손 [ ] 기타( ) [ ]
		정정발급	

별지 제3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신규발급>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7,000원
------	--	---------------

<p>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p> <p>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p> <p>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p> <p>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p> <p>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합니다.)</p> <p>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p> <p>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수출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p> <p>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p> <p>나. 관세청장이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13조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p> <p>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실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lt;재발급&gt; 별도 첨부서류 없음</p> <p>&lt;정정발급&gt;</p> <p>1.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여 정정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2. 정정사유 입증 서류</p> <p>&lt;연결원산지증명&gt;</p> <p>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p>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반입신고 대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된 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p> <p>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p> <p>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p> <p>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p> <p>3.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p> <p>4. 수입한 물품과 재수출하는 물품의 동일성 확인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p>	<p>(다만, 세관장 발급 시 면제)</p>
---	--------------------------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처리기간란의 “20”을 “30”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20”을 “3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조제10항, 별지 제3호서식(제10조제10항과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5월 1일
2. 제10조제13항: 2024년 4월 1일
3. 별표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4-가의 특정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규정 개정에 관한 교환서한」이 발효되는 날

제2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10항,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8의 개정규정은 해당 개정규정 시행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작성·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 처리기간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에 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7조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6.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16. (현행과 같음)</p> <p><u>17. “연결원산지증명”이란</u> <u>체약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 중 추가 가공 없이 동일한 협정이 체결된 다른 체약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에서 작성·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원산지증명을 말한다.</u></p>
<p>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p> <p>① 증명서발급기관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1. 증명서발급기관의 <u>명칭·주소·전화번호</u> 및 팩스번호</p> <p>2.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p>	<p>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p> <p>① ----- ----- ----- ----- ----- ----- -----.</p> <p>1. ----- <u>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u> -----</p> <p>2. -----</p>



하는 자의 소속·직위·성명  
및 서명 견본

3. (생략)

②·③ (생략)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류 원본 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

----- 소속·성명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원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  
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  
출할 수 있다.

가.·나. (생 략)

다.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  
하여 원산지를 확인한 물  
품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별지 제26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사본 <단서  
신설>

② ~ ⑨ (생 략)

⑩ 제9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  
-----  
-----  
-----.

다만, 증명서발급기관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사실을 전  
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발급신청서를 -----

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 사유서

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⑪ (생략)

---. 이 경우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이 제11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발급된 경우로서 같은 방식으로 정정발급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정정발급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⑪ (현행과 같음)



동일성 확인 등을 위해 관세  
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 ⑥ (생략)
-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  
-----  
-----  
----- 30일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⑦ -----  
----- 인증을 받은 날  
부터 5년-----.

- ⑧ -----  
-----  
----- 1년 전부터 30일 전까지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⑨ ~ ⑮ (생략)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⑤ (생략)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7조제1항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2년간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의 기간 내에 -----

-----

-----

-----

-----

-----

-----

-----

-----

-----

-----

-----

-----

-----

-----

⑨ ~ ⑮ (현행과 같음)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인증을 받은 날

부터 5년-----

-----

-----

-----

-----

-----

<p>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p> <p>⑦ (생략)</p> <p>제31조(사전심사) ① ~ ③ (생략)</p> <p>④ <u>사전심사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를 준용한다.</u></p> <p>⑤ (생략)</p> <p>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        통보 등) 영 제39조제2항에 따        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사전심사서 <u>원본</u></p> <p>3. (생략)</p>	<p>-----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31조(사전심사) ① ~ ③ (현행        과 같음)</p> <p><u>&lt;삭 제&gt;</u></p> <p>④ (현행 제5항과 같음)</p> <p>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        통보 등)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원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	--